**YOURSSU 회칙**

**숭실대학교 중앙동아리 유어슈 회칙 [전면개정, 2023.10.5., 회칙 제00007호]**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[명칭]

본 동아리는 YOURSSU이며 한글 표기는 유어슈라 한다. (이하 “유어슈”라 한다.)

### 제2조 [목적]

유어슈는 숭실대학교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즐겁고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에 공헌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회원

### 제3조 [구성]

유어슈의 회원은 준회원, 정회원 및 졸업자로 한다.

### 제4조 [준회원]

①준회원이란 숭실대학교 학사과정 재적생 중 유어슈에 가입하여 파트 인큐베이팅 과정에 있는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.

② 준회원은 유어슈 활동에 제한이 있다. 다만, 해당 파트리더와 회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③ 준회원은 비액티브 기간을 가질 수 없다.

### 제5조 [정회원]

① 정회원 자격은 파트 인큐베이팅 과정을 완료한 준회원 중 해당 파트리더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부여된다. 파트 인큐베이팅 과정이 없는 파트의 신규 가입자는 유어슈 가입과 동시에 정회원이 된다.

② 정회원은 유어슈에 최초 가입 후 두 학기 연속 활동 후부터 매 학기 시작 전에 해당 학기에 대한 액티브와 비액티브를 결정할 수 있다. HR 파트는 매 학기 시작 전 정회원의 액티브와 비액티브 여부를 조사하여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.

③ 정회원은 비액티브 기간을 연속 상관 없이 최대 두 학기를 초과하여 가질 수 없다. 단, 군 복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해당하지 아니한다.

④ 정회원이 비액티브인 기간에는 유어슈 활동에 제한이 있다. 단, 파트 활동의 제한 사항은 해당 파트리더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.

⑤ 정회원이 학사과정을 졸업한 때에는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### 제6조 [졸업자]

졸업자는 유어슈의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학사과정을 졸업한 자를 의미한다.

### 제7조 [회원의 권리와 의무]

① 모든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진다.

1. 유어슈의 회칙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2. 유어슈의 목적 실현과 운영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. 단, 졸업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.
3. 유어슈에 최초 가입 후 반드시 두 학기 연속 활동하여야 한다.

② 정회원이자 액티브인 자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.

1.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2.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가진다.
3. 총회 안건과 회칙 개정을 리더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.

## 제3장 회장, 부회장

### 제8조 [지위]

① 회장은 유어슈를 대표하며, 총회와 리더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### 제9조 [선출 및 임기]

① 회장, 부회장 선출은 정규학기 종료 후 14일간 후보자 등록 기간을 가진 후 투표를 통해 한다. 회장, 부회장 각 후보자가 1명 이상 등록 시 제10조에 따라 선거를 진행한다.
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자 등록이 아무도 없을 시에는 전임 회장, 부회장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. 단, 임명의 경우 리더회의를 통하여 의결한다.

③ 회장, 부회장의 임기는 6개월을 원칙으로 2월 혹은 8월 중에 시작하며 연임 가능하다.

④ 회장, 부회장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리더회의를 통해 선정된 파트리더 중 1인이 후임 회장,부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### 제10조 [선거]

① 선거는 직접, 보통, 비밀,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선거권은 정회원 중 해당 학기 액티브 회원에 한한다.

③ 피선거권은 유어슈의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으로 한다.

④ 선거위원회는 리더회의 구성원과 HR 파트로 구성되며, 후보자 등록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된 사항을 선거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당선은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가 된다. 단, 단독 후보인 경우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.

⑥ 기타 사항은 선거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정회원은 선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위원회는 이의가 정당할 경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제11조 [권리와 의무]

① 회장은 총회와 리더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유어슈의 활동을 총괄한다.

② 회장은 유어슈의 활동 및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권한을 가진다.

③ 회장은 유어슈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.

④ 회장은 파트리더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.

⑤ 회장은 파트리더를 통해 회원에게 유어슈 업무를 분배할 수 있다.

⑥ 부회장은 회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.

⑦ 회장, 부회장은 유어슈의 발전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.

⑧ 회장, 부회장은 후임 회장, 부회장의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하여야 한다.

⑨ 회장, 부회장은 유어슈를 대표하여 동아리연합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한다.

### 제12조 [탄핵]

① 회장 또는 부회장이 회칙을 위반하였거나 유어슈 활동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에서 탄핵할 수 있다.

② 회장 또는 부회장의 탄핵은 리더회의에서 발의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.

③ 회장 또는 부회장의 탄핵안이 발의되면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을 정지한다.

④ 회장의 권한이 정지되면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회장, 부회장 권한이 모두 정지되면 리더회의를 통해 선정된 파트리더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4장 파트리더

### 제13조 [지위]

파트리더는 각 파트를 대표하는 1인이며, 리더회의의 구성원이 된다.

### 제14조 [임명 및 임기]

① 파트리더는 전임 파트리더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
② 파트리더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최소 6개월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.

③ 파트리더가 임기를 만료하지 않고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파트 회원의 추천을 받은 적임자를 회장이 후임 파트리더로 임명한다.

### 제15조 [권리와 의무]

① 파트리더는 해당 파트 회원에게 유어슈 활동을 분배할 수 있다.

② 파트리더는 해당 파트 회원에게 구두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.

③ 파트리더는 리더회의에 해당 파트 회원에 대한 징계 발의를 할 수 있다.

④ 파트리더는 후임 파트리더의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하여야 한다.

⑤ 파트리더는 매달 한 번 파트 활동을 정리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16조 [해임]

파트리더가 회칙을 위반하였거나 유어슈 활동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리더회의를 통해서 해임될 수 있다. 본조에 의해 파트리더가 해임되는 경우 제14조 제3항에 따라 후임 파트리더를 임명한다.

## 제5장 총회

### 제17조 [지위]

총회는 유어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.

### 제18조 [구성]

총회의 구성은 해당 학기 정회원 중 액티브 회원 전원으로 한다.

### 제19조 [의장]

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.

②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회장, 부회장 탄핵 결정에 관한 총회는 리더회의를 통해 선정된 파트리더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20조 [기능 및 권한]

총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.

1. 회칙 개정
2. 회장, 부회장 탄핵 결정권
3. 예산 및 결산보고
4. 파트별 활동 보고
5. 유어슈 활동 및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 결정

### 제21조 [소집]

① 정기 총회는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한다.

② 임시 총회는 유어슈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해당 학기 정회원 중 액티브인 자 1/3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거나 리더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의장이 지체 없이 소집한다.

③ 총회 소집 일정은 의장이 결정하며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제22조 [의결]

① 총회는 정회원 중 액티브 회원에 한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
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른 의결은 출석한 인원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6장 리더회의

### 제23조 [지위]

리더회의는 유어슈 제반의 실무적인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구이다.

### 제24조 [구성]

리더회의의 구성은 회장, 부회장, 및 파트리더로 한다.

### 제25조 [의장]

① 리더회의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.

②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회장, 부회장 궐위 시 파트리더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26조 [기능 및 권한]

리더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.

1. 회칙 개정안 발의권
2. 총회 안건 상정
3. 회계담당자가 작성한 예산안 검토 및 승인
4. 동아리 정규 사업 심사 및 결정
5. 회장, 부회장 탄핵 발의권
6. 회원의 징계 결정
7. 기타 총회가 위임한 사항 논의 및 의결

### 제27조 [소집]

① 정기 리더회의는 매달 1회 이상 진행한다.

② 임시 리더회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28조 [의결]

① 리더회의는 구성원에 한하여 2/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
② 리더회의의 의결은 출석한 인원의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7장 재정

### 제29조 [재정]

유어슈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, 그리고 동아리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.

### 제30조 [회비]

① 회비는 준회원 및 정회원 중 액티브인 회원에 한하여 한 학기당 20,000원으로 하며, 정기 총회 익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회계담당자에게 납부한다.

② 회비는 리더회의 의결을 통해서 해당 학기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.

③ 회비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. 단,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.

1. 준회원인 자가 정회원으로 승격하지 못한 경우
2. 취직 및 인턴 활동, 본인 질병, 가족 병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예기치 못한 비액티브 전환의 경우

### 제31조 [회계연도]

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# 제32조 [예산편성 및 관리]

① 예산은 매 학기 시작 전 회계담당자가 편성하고 리더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.

② 회계담당자는 유어슈의 모든 재정 및 회계 관리를 관장하며, 회장, 부회장이 예산을 집행한다.

### 제33조 [예산 및 결산보고]

① 회계담당자는 예•결산안을 작성해야 하며 정기 총회에서 예산 및 결산보고를 매 학기 1회 실시한다.

② 회계담당자는 총회에서 예산 및 결산보고에 대한 회원의 질의에 응답할 의무를 가진다.

③ 회계담당자 유고 시 회장 또는 부회장이 예산 및 결산보고를 대행한다.

### 제34조 [사업 수익 및 지원금]

① 유어슈의 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금은 유어슈에 속한다.

② 유어슈의 활동 및 사업에 대하여 유어슈 재정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전항에서의 지원 금액은 활동 및 사업담당자, 회장, 회계담당자의 합의로 합리적이게 산정하며, 리더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.

## 제8장 징계

### 제35조 [징계의 종류 및 절차]

① 징계는 구두 경고, 서면 경고, 영구제명으로 나뉜다.

② 구두 경고를 제외한 모든 징계 결정 사안은 HR 파트에서 해당 회원에게 개별 통보한다.

③ HR 파트 회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본 장의 HR 파트 역할에 대하여 회장, 부회장이 대신한다.

### 제36조 [구두 경고]

① 구두 경고는 유어슈 또는 파트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에게 처분된다.

② 구두 경고는 파트리더가 해당 파트 회원에게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### 제37조 [서면 경고]

① 서면 경고는 구두 경고를 받은 후 동일한 사유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외부적으로 유어슈의 위상을 실추시킨 회원에게 처분된다.

② 서면 경고의 경우 HR 파트의 사안 검토 후 처분이 결정되며, 서면 경고 시 일정 기간 유어슈 활동이 제한된다.

③ 전항에 대한 활동 제한 기간은 HR 파트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. 단, 그 기간은 30일을 넘길 수 없다.

### 제38조 [영구제명]

① 영구제명은 법 위반과 같은 중대한 문제 혹은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동일한 사유로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게 처분된다.

② 영구제명의 경우 리더회의에서 사안 검토 후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결정된다.

부칙 <제정 제00001호 2013.2.2.>

이 회칙은 2013년 2월 2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칙 <개정 제00003호 2016.1.14.>

이 회칙은 2016년 1월 14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칙 <개정 제00005호 2018.1.13.>

이 회칙은 2018년 1월 1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칙 <개정 제00006호 2019.1.19.>

이 회칙은 2019년 1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부칙 <전면개정 제00007호 2023.10.5.>

이 회칙은 2023년 10월 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